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각 용도지역에 규제되고 있는 건축제한을 완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 또한 「구미시 상생발전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운영에 따른 조례사항을 반영해 조례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민원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미시 상생발전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운영에 따른
조례사항 반영(안 제18조의4)
- 나. 이행보증 절차 간소화
- 이행보증금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확약서로 갈음(안 제32조)
- 다. 상위법령 현행화 및 용어 정리(안 제54조, 안 제59조의2, 안 제60조,
안 제64조, 안 제66조, 안 제67조의2, 안 별표27)
- 라. 각 용도지역·지구 별 건축 제한 완화(안 별표14, 안 별표15, 안
별표16, 안 별표17, 안 별표18, 안 별표19, 안 별표20, 안 별표21,
안 별표22)

3. 조 례 안 : 붙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 종합허가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 · 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2절에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사용기준에 대한 사항) 법 제52조의2 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2. 기반시설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3. 그 밖에 기금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

제3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이행보증금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이행보증에 대한 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4조제1항제1호 중 “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도시계획 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59조의2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영 제84조의2제2항에”를 “영 제84조의2제4항에”로, “(2016년 12월 31일)”을 “(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로, “영 제84조의2제2항의”를 “영 제84조의2제4항의”로 한다.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제60조제2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유통개
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제60조제6호 중 “및 다목”을 “부터 다목”으로 한다.

제64조제3항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주택(「임대주택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을 “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
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으로 한다.

제66조제2호 중 “대지안의”를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인”으로 한다.

제67조의2의 제목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을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문화재보호법」 제57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률」 제57조”로,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별표 14, 별표 15, 별표 17, 별표 18, 별표 21, 별표 22를 별지와 같이 한
다.

별표 16 제2호나목 및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별표 19 제2호나목, 다목 및 라목을 삭제한다.

별표 20 제2호타목 및 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7 기호(■) 제1호 중 “농어촌도로 밋”을 “농어촌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로 밋”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1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 제외)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1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 제1차산업생산물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첨단 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 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1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1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다음

(1)부터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아 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도정공장

(2) 식품공장

(3)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4)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 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2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바목·사목(지역아동센터 제외)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

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중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2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4호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
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
로서 영 별표16 제2호 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8조의4(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사용기준에 대한 사항)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u> <u>2. 기반시설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u> <u>3. 그 밖에 기금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u>
제32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32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이행보증금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이행보증에 대한 확약서로 같음할 수 있다.</u>
제54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	제54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 ----- ----- ----- -----.

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
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개발진흥지구중 종전 준도시
지역 취락지구 : 별표22와 같
다.

2. (생 략)

3.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
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
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
친 경우에 한한다)

② (생 략)

제59조의2(건 폐울 특례) 제59조에
불구하고 영 제84조 또는 제84
조의2에 따라 적용하는 건 폐울
은 다음과 같다.

1. 삭 제

2. · 3. (생 략)

4.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 · 보전관리지역 · 생
산관리지역 ·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
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

-----.

1. ----- 관리지
역 -----
--.

2. (현행과 같음)

3. -----

-도시계획위원회-----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의2(건 폐울 특례) -----

-----.

2. · 3. (현행과 같음)

4. -----

퍼센트 이하

가. (생략)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
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
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 (생략)

5. ~ 7. (생략)

8.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
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
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
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
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 건에 한정한다)이 부지
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
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
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
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
서 영 제84조의2제2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현행과 같음)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다. (현행과 같음)

5. ~ 7. (현행과 같음)

8. 영 제84조의2제4항에 -----

40퍼센트 이하(이 경우 추가
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
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
용한다)

9. (생략)

제60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
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
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
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
정된 경우: 40퍼센트 <후
단 신설>

나. (생략)

3. ~ 5. (생략)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
조제8호가목 및 다목의 규정
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

9. (현행과 같음)

제60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제31
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
센트로 한다.

나.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6. -----

----- 부터 다목 -----

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 및
같은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
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64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생략)

② 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
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
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
12조제1항에 따라 임대 의무기
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
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
다.

④ ~ ⑥ (생략)

제66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
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
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
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
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

제64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현행과 같음)

③ -----

-- 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 또는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6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생략)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7조의2(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제59조 및 제64조제1항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1. (현행과 같음)

2. -----
----- 대지안의 건
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제67조의2(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
-- 국가등록문화유산-----

-----.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① 제51조 제1항 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제52조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이 입안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2. 기반시설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2.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

3. 공공시설 또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③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귀속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받거나 제3항에 따라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100분의 10 이상을 제2항제1호의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구 또는 군은 제3항에 따라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전부를 제2항제1호의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제7조(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등 확보) ① 법 제52조의 2제1항제3호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② 삭제

③ 삭제

④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의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

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④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⑥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84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④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

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⑦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별표15]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16]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17]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별표18]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
·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
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
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중학교·고등학교(졸업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별표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
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
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도정공장

2) 식품공장

3)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4)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및 같은 호 너목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

설

[별표21]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22]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중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별표23]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
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
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자목·너목 및 러목
(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
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
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

차장 및 세차장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① 법 제5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안에서 정하되, 그 세부적인 비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소 관 부 서		도시계획과
입 안 자	과 장	장 봉 섭
	팀 장	이 재 학
	담 당 자	금 진 우 (480-5404)